



# 대통령직 정권인수위, 건의사항

본회는 지난 2월12일 대통령직 정권인수위원회 임채정 위원장 앞으로의 건의서를 통해 양륙업계 당면현안을 설명하는 한편 각종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건의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본회 김수근 회장이 농단협 단체장들과 함께 노무현대통령 당선자와 토론회를 갖을 예정에 있어 국내 양륙

현안을 대통령 당선자에게 직접 피력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 자리에서 김수근 회장은 본회가 대통령직 정권인수위에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각종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본회가 정권인수위에 제출한 건의사항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수신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임채정 위원장

발신 : 사단법인 한국양륙협회 회장 김수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6-14 경동프라자 422호

전화 : 02)969-6600, 팩스 : 02)969-7115

E-mail : deer1975@yahoo.co.kr

노무현 대통령님 당선을 1만5천 사슴사육 농가와 더불어 진심으로 경하드립니다.

저희는 사슴을 사육(양륙)하여 한약재 및 축산물인 녹용을 생산하는 농민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1975년 농림부 인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녹용은 전통 한방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한약재 원료로서 전세계 소비량의 80%를 국내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최대 녹용 생산국인 뉴질랜드를 비롯, 캐나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국가들은 오로지 한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로부터 녹용을 수입하기 위해 연간 소요되는 외화액은 2,530만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여행객 휴대녹용 및 밀수품

까지 포함하면 연간 5천만불 이상의 외화가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건의서

수신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임채정 위원장

발신 : 사단법인 한국양륙협회 회장 김수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6-14 경동프라자 422호

전화 : 02)969-6600, 팩스 : 02)969-7115

E-mail : deer1975@yahoo.co.kr

노무현 대통령님 당선을 1만5천 사슴사육 농가와 더불어 진심으로 경하드립니다. 저희는 사슴을 사육(양륙)하여 한약재 및 축산물인 녹용을 생산하는 농민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1975년 농림부 인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녹용은 전통 한방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한약재 원료로서 전세계 소비량의 80%를 국내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최대 녹용 생산국인 뉴질랜드를 비롯, 캐나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국가들은 오로지 한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로부터 녹용을 수입하기 위해 연간 소요되는 외화액은 2,530만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여행객 휴대녹용 및 밀수품까지 포함하면 연간 5천만불 이상의 외화가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사슴사육 농민은 정부의 무관심하에 스스로의 힘으로 40여년간 양육산업에 임해 왔으나, 1990년 사슴수입 완전개방으로 농가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계속되는 무분별한 녹용수입 확대정책으로 더 이상 사슴사육을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1만 5천 사슴사육 농민의 폐농은 국가 전체로 보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 1조원에 달하는 국내 녹용시장을 모두 외국 사슴사육 농민에게 내줄 경우 국가적 손실과 중과이라는 거대 경제녹용시장을 목전에서 포기함으로써 인만 국가적 자산손실을 감 할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양육산업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오늘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스스로도 국제경쟁에 대비하여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에 전념을 다하고 있으나, 정책 및 제도적 뒷받침 없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부득이 정권인수위원회에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건의드리오니, 검토하시어 사슴사육 농민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사슴사육 농민은 정책의 무관심하에 스스로의 힘으로 40여년간 양륙산업을 일구어 왔으나, 1990년 사슴수입 완전개방으로 농가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계속되는 무분별한 녹용수입 확대정책으로 더 이상 사슴사육을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1만 5천 사슴사육 농민의 폐농은 국가 전체로 보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 1조원에 달하는 국내 녹용시장을 모두 외국 사슴사육 농민에게 내줄 경우 국가적 손실과 중국이라는 거대 잠재녹용시장을 목전에서 포기함으로 인한 국가적 자산손실을 잘 알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양륙산업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오늘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스스로도 국제경쟁에 대비하여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에 전념을 다하고 있으나, 정책 및 제도의 뒷받침 없이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부득이 정권인수위원회에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건의드리오니, 검토하시어 사슴사육 농민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으로 반영하여 주시 바랍니다.

## 1. 사슴 의무도축 시행 개선

### 1) 현황

- 사슴은 2003년 1월 1일부터 축산물 가공처리법상 정식도축장에서만 도축할 수 있는 수축으로 포함됨.
-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 113개 도축장 중 사슴도축이 가능한 도축장은 13개에 불과하며, 도(道)내 단 한곳도

사슴도축장이 없는 곳도 있음.

- 사슴은 특성상 소비자가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녹용 및 중탕가공품의 진위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어 자가도살이 불가피함.
- 특히 농가당 월 1두 정도 도살에 그쳐 정식도축장 활용도가 극히 낮음.

### 2) 문제점

- 사슴 의무도축 시행에 따라 영세농가의 소득증대 일환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농장자체 중탕가공 판매, 또는 소비자 그룹단위 농장방문 구매가 중단되어 농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음.
- 인근에 정식 도축장이 없는 농가의 불법도축으로 범범자 양산이 우려됨.
- 현재 운영중인 도축장 또한 사슴도축량의 불확실성 등으로 사슴도축을 위한 별도시설 구비 의지가 거의 없는 실정임.
- 사슴을 비롯, 8개 의무도축 확대시행 가축도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 3) 건의사항

- 사슴을 비롯, 8개 가축에 대한 의무도축 확대시행을 최소 5년 이상 시행유예.
- 축종별 특성을 감안 현실성 있는 대책을 법 개정에서 반영하여야 함.
- 사슴의 경우 정식 식육유통을 위한 도축은 정식 도축장을 이용하도록 하여 최소 도(道)별 전문도축장 2개소 이상씩을 확보토록 행정 지원하여 주시고,
- 농장내 자가중탕 가공의 경우 자가소비의 개념으로 인정하여 자가도축을 허



용하되, 간이 작업장 및 폐수처리 시설 기준을 법으로 정해 이를 갖춘 농가에 한하도록 하며,

- 이들 농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위생 교육 등을 관련 생산자 단체가 위탁 시행토록 하여 시행효율 제고 및 지방자치 행정기관의 업무편의를 도모.

## 2. 절편녹용 수입개방 협상 유보

### 1) 현황

- 녹용은 현재 전지(썰지 않은 원형상태)로만 수입하도록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뉴질랜드가 절편녹용(얇게 썰어 소단위 규격 포장한 녹용) 수입허용을 요구하며 한·뉴간 통상쟁점화 하고 있음.

- 우리정부는 2002년도 말까지 절편녹용 규격기준을 대한약전의 한약규격집에 신설하여 개방을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뉴질랜드에 제시함.

- 2003년 1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녹용절편 규격기준(안)을 입법예고 함.

- 사슴사육 농민은 절편녹용 수입시 가짜, 저질녹용 혼입으로 인한 소비자의 녹용에 대한 신뢰저하에 이은 녹용시장 축소, 외국산 녹용과의 가격차 심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여 강력한 반대입장을 전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 2001년 9월 11일 대규모 사슴농민 쉼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음.

- 2002년 6월 농가대표단을 뉴질랜드에 파견,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및 농림

부관계자를 면담, 5년내 수입허용 불가 입장을 전달한 바 있음.

### 2) 문제점

- 절편녹용 수입허용시 중국, 러시아 등에서의 순록뿔, 저질품 혼입 등을 현실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으며, 특히 수입금지된 북미지역 녹용의 중국, 홍콩 등지를 경유한 수입이 우려됨.

- 가짜, 저질품 녹용수입으로 국내농가의 경쟁력 상실 불가피.

- 국민건강 위해 우려 및 무분별한 외화지출 증가.

### 3) 건의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마련한 녹용절편 규격기준(안)은 녹용의 품종별, 산지별, 사료종류별 효능차이 등에 대한 연구진행 후 제정되어야 함.

- 국내법을 고쳐가며 없는 품목을 신설하여 절편녹용 수입을 허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절편녹용 수입협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망함.

- 그간의 협상으로 수입이 불가피할시 최소 5년 이후 단계적 개방하여야 하며, 국내농가 피해보상 및 경쟁력 제고 정책 지원 대책이 선 수립되어야 함.

## 3. 수입녹용 불법유통 단속 강화

### 1) 현황

- 현행법상 외국으로부터의 녹용수입은 원료의약품 및 가공수출용 식품원료



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으며, 반드시 정식 허가업소를 통해 규격품 한약재로 유통해야 함.

- 그러나 수입녹용을 용도 외로 불법 유통, 국산 축산물 녹용으로 둔갑 판매 함으로써 녹용유통질서 파괴 및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국산녹용의 판로를 막고 있음.

- 1998년 이전까지는 총 수입량의 10% 미만이던 생 녹용 수입량 (22,559kg)이 99년에는 총 수입량의 17.8%인 80,458kg, 2001년에는 90,734kg(38.8%)으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불법유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 수입녹용 불법유통은 국내농가 피해는 물론 약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반 사회적 범죄행위임.

## 2) 문제점

- 이처럼 수입녹용 불법유통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법유통 자체를 부정하며 단속에 미온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슴농가 스스로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신고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농가간 불신조장 등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효능 등에서 차이가 있는 외국산 녹용의 국산둔갑 유통으로 소비자의 녹용에 대한 신뢰저하 등 문제가 우려

됨.

## 3) 건의사항

- 관리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합동 실태조사단을 구성, 수입녹용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요망.

- 수입녹용 불법유통 외에도 부적합녹용의 불법유통을 방조하고 있는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상 선통관 후검사제도 개선,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자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등 조치를 요망.

- 사슴만성소모성질병(CWD) 발생국으로 녹용수입이 금지된 미국, 캐나다 지역산 녹용이 중국, 홍콩을 경유해 한국으로 제한없이 편법 수입되어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망함.

2003년 2월 12일

사단법인 한국양록협회 회장 김수근  
외 회원일동